임 직 원 소 송 지 원 규 정

목 차

제1장 총칙	1
제1조 목적	1
제2조 정의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1
제3조 지원대상	2
제3조의2 지원대상의 확대	2
제3조의3 적극행정 기준	2
제4조 소송비용 지원시기	2
제5조 변호사 선임	2
제2장 민사소송	3
제6조 소송비용 지원	3
제7조 소송비용의 정산	3
제3장 형사소송	3
제8조 소송비용 지원	3
제9조 소송비용의 정산	3
제4장 지원절차	3
제10조 지원신청	4
제11조 지원결정	4
제12조 사실확인 등	4
5장 소송지원위원회	4
제13조 설치	4
제14조 구성	4
제15조 심의·의결사항 ·····	5
제16조 회의	5

	제17조	의결내용의 보고	5
제	6장 기	타	5
	제10고	서약서 징구 및 채권보전	-
	제19조	위임사항	5
부	칙	·····	;

임직원소송지원규정

2017.5.19.제정(규정제1137호) 2017.12.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(규정제1160호) 2019.11.7.개정(규정제1249호) 2023.5.10.개정(규정제1425호) 2024.12.31.개정(규정제1495호)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 사건으로 수사개시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·경제적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,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능동적 업무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1.7., 2023.05.10.>
- 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11.07., 2023.05.10.>
 - 1. "임직원"이란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(이하 "공단법"이라 한다)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제규정에서 정한 임원 및 직원(비정규직 포함)을 말한다.
 - 2. "업무수행"이란 공단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.
 - 3. "피소 임직원"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소송(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포함)을 당한 임직원으로서 퇴임(퇴직)한 자를 포함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- 가.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「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」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당연 퇴직된 임원 또는 제9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
 - 나.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「인사규정」에 따라 당연 퇴직 또는 징계 면 직된 임직원
 - 4. "소송비용"이란 피소사건 발생 후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으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.
 - 가. 변호사비용(변호사 선임비용, 법률상담, 문서 작성, 변호인 동행 등에 따른 비용 등) 나. 인지대, 송달료, 증인신청비용, 감정비용, 공증비용 등 관련 법규에서 인정하는 비용 5. "주관부서의 장"이란 「직제시행세칙」에 따라 소송업무를 총괄 하는 부서(팀)의 장을
 - 6. "소관부서"란 「직제시행세칙」에 따라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
말하다.

- 7. "소송지원"이란 피소 임직원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담. 변호사 선임추천 등 법률적 지원을 말하다.
- 8. "적극행정"이란 공단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 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 <신설 2023.05.10.>
- 제3조(지원대상)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피소 임직원을 지원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1.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
 - 2. 형사소송 결과, 금고 이상의 실형,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 - 3. 그 밖에 공단의 이미지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소 송지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
- 제3조의2(지원대상의 확대) ① 피소 임직원이 제2조제8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을 수 있다.
 - ② 피소 임직원이 감사 부서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조의3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피소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[본조신설 2023.05.10.]

제3조의3(적극행정 기준) 이 규정에서 인정되는 적극행정 기준은 「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」제6조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3.05.10.]

- 제4조(소송비용 지원시기) ① 소송비용은 피소 임직원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소 임직원이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소송지원위원회의결을 거쳐 최종판결 확정 전에 소송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우선 부담을 하지 아니한다.
 - 1.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
 - 2. 업무상 배임, 횡령,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
- 제5조(변호사 선임) ① 소송대리인은 피소 임직원이 직접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선임료의 과다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5.10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피소 임직원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단고 문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. <신설 2023.05.10.>

제2장 민사소송

- 제6조(소송비용 지원) ① 민사소송 비용지원은 피소 임직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되,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인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범 위 내에서 지원한다.
 - ② 공단은 소송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소 임직원이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이행해야 할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피소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(소송비용의 정산) ① 피소 임직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급 받은 후 최종 판결에서 고의·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(일부 패소 포함)한 경우에는 공단이지원한 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1.7.>
 - ②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피소 임직원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소송비용을 공단에 귀속시킨다.

제3장 형사소송

- 제8조(소송비용 지원) 형사소송 비용지원은 피소 임직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되,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별(형사입건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인정)로 30백만원(부가가치세별도)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종 판결 확정까지 총 한도는 60백만원(부가가치세별도)으로 한다. 다만, 피소 임직원이 심급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총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7.>
- 제9조(소송비용의 정산) 피소 임직원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급 받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확정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19.11.7., 2023.05.10.>
 - 1.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: 상환하지 않음
 - 2. 형사소송 결과 금고 이상의 실형,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: 지원금액 전액상환

제4장 지원절차

- 제10조(지원신청) ① 피소 임직원이 소송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소 직원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원신청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송지원신청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② 퇴직한 임직원이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지원신청서를 직접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5.10.>
- 제11조(지원결정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 지원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② 지원요청 사항이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추천 등 법률지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한다. <개정 2023.05.10.>
- 제12조(사실확인 등) ① 주관부서의 장은 피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,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②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피소 임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상 또는 대·내외 감사조치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및 중과실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5.10.>

제5장 소송지원위원회

- 제13조(설치) 피소 임직원에 대한 지원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지원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소관 임원으로 한다.
 -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,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,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고, 위원회의 회의준비 및 회의내용의 기록·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노동조합원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심의 · 의결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소송지원의 적정여부(업무수행 관련성 판단 등)
- 2. 소송비용 등 선지급에 관한 사항
- 3. 소송비용의 지원범위,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
- 4. 지원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의 중단
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「직제규정」에서 정한 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 -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소 임직원 또는 사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지원의결서에 따라 작성·보관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4.12.31.>
- 제17조(의결내용의 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 정 2023.05.10.>

제6장 기 타

- 제18조(서약서 징구 및 채권보전) ① 피소 임직원이 소송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준수사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5.10.>
 -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 지급할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1.7., 2023.05.10.>
 - 1.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
 - 2. 금융기관 예·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
 - 3. 본인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
 - 4.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 - ③ 제2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5.10.>
- 제19조 (위임사항)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

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3.05.10.>

부 칙 <규정 제1137호, 2017.05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6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한다.

부 칙 (제규정관리규정) <규정 제1160호, 2017.12.0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법률 제14939호(2017.10.24.)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"교통안전공단법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49호, 2019.11.0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25호, 2023.05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된 소송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민·형사 사건으로 수사개시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부 **칙**<규정 제1495호, 2024.12.31.>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임직원소송지원규정 [별지 제1호서식](제10조 관련) <개정 2023.05.10.>

소송지원신청서

	부서명	
신청인	직 급	성명
	(직위)	(연락처)
لا الم الم	사건종류	사건번호
사 건 상 세	사건개시일	사건종료일
	원고(성명)	원고(주소)

사건 개요:

신청인 의견:

첨부서류

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장 의견: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장

(서명 또는 인)

소송지원위원회 귀중

1. (공)소장(또는 입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사본 1부.

- 2. 사건 결과(검찰·경찰 통지서, 판결문 등) 사본 1부.
- 3.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.
- 4. 각종 비용증빙 서류

※법률자문, 변호사 선임요청 등 법률지원 사항은 소송지원신청서 제출 생략 ※주의: 각종 자료 제출 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■ 임직원소송지원규정 [별지 제2호서식] (제18조 관련)

서 약 서

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공단에 대하여 소송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서약합니다.

- ① 「임직원 소송지원 규정」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이며, 소송지원 결정이나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받은 후 소송결과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.
- ② 담보재산의 감소 또는 상실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비용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때까지 지원된 비용 중 담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겠습니다.
- ③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소송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,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 등 지급금액과 지원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.
- ④ 본 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고 그 조치의 실행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서약자(피소임직원 본인) 소 속:

직 위:

성 명 : (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귀중

■ 임직원소송지원규정 [별지 제3호서식] (제16조 관련) <개정 2023.05.10.>

소송지원의결서

1 이렇게취	소 속	성 명	
1. 인적사항	직 급 (직 위)	생년월일	

- 2. 주 문
- 3. 개요 등 사실 기록
- 4. 의결사항

「임직원소송지원규정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하고 서명함.

년 월 일

위 원 장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

간 사